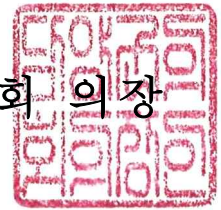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9. 27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담양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제1조, 제2조)

나.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제3조)

다. 종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(제4조)

라. 설치 및 장소에 관한 사항(제5조)

마. 설치시기 및 기간에 관한 사항(제6조)

바.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(제7조)

사.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제8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9. 27. ~ 10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의 보조금지원 시설·사업 등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조금”이란 「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2. “보조금지원 표지판(이하 “표지판”이라 한다)”이란 담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·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담양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보조사업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이거나 각각의 기관위임사무일 경우
2.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
3.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연간 보조금액이 건당 1,000만원 미만인 경우
4. 운영표지판의 경우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

제4조(종류 및 기재사항 등) ① 표지판은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.

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 다만,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해당 시설·사업 등의 명칭
2. 보조사업자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 해당 대표자를 말한다)의 인적사항
3. 보조금 지원기관
4.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(사업명, 보조금액 등)
5.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

③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, 규격·형식,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설치 및 장소) ① 보조사업자는 각각 시설·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

1. 시설표지판: 건립한 시설. 다만,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.
2. 운영표지판: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중인 시설

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. 다만,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설치시기 및 기간)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·사업 등을 개관·개시하는 날부터

설치한다.

- 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·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.

제7조(비용부담) 표지판의 설치·관리·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.

제8조(관리감독 및 평가) 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.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- ② 군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표지판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,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군수는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.